

2024.11

전북 순창군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보고서

| 최 종 보 고 |

제출문

순창군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북 순창군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발주처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연구원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이서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목 차

I .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향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방향	2
2. 연구계획	3
1) 연구개요	3
2) 연구범위	3
3) 연구 내용	3
4) 연구방법	4

II . 순창군 조례현황

1. 순창군 조례 운영 현황 점검	6
1) 전북 순창군 자치법규 현황	6
2) 전북 순창군 자치법규 편장 구성	7
3) 제개정시기별 조례 현황	12
2. 순창군 필수조례 정비 현황 점검	14
1) 필수조례의 개념과 정비 필요성	14
2) 전북 순창군 필수조례 정비현황 검토	15

III . 순창군 조례 정비방안

1. 순창군 조례 정비방안	21
2. 미정비 필수정비조례 정비	22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22
2)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23
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5
4)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26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	

료·사용료의 산정)	30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32
7)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35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35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36
10)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37
11)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38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39
13)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41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42
15) 온천법 시행령 제22조(수수료)	43
16)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45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47
18)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48
1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49
20)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50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51
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 등의 운영 등)	53
2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53
2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54
25)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55
26) 초지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56
3. 상위법의 주민권익보호 반영한 개정 필요성	59
1)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개정 필요 조례	59

2) 외국인처우에 관한 법령취지반영한 개정 필요	60
3) '장해' 오기로 권익보호 혼선초래 위험 시정 필요	61
4) 공공요금 감면 관련 입법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 시정	63
5) 장애차별적 편견을 갖게 하는 표현에 대한 개선	68
4. 상위법령 개정 및 변경에 따른 정비	75
1) 순창군 계획조례	75
2)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77
3) 순창군 공인 조례	78
4)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78
5)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79
6)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80
7)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1
8)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2
9)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3
10) 순창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83
11)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4
12)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85
13)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86
14)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86
15)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조례	87
5. 소관 기관 관련 변경사항 반영 검토	89
1)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89
2)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0
6. 각종위원회관련 조례 정비 검토	92
1) 위원회 구성 의회의원 참여 관련 검토	92
2) 위원회 구성의 성별 불균형 방지를 위한 보완 필요성 검토	95
3)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규정 관련 검토	95
7.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적용한 일괄정비검토	97

IV. 신규조례제정제안

1. 현행 정책사업의 추진기준 확보	103
1) 순창군 빈집 등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103
2) 순창군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104
3) 순창군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105
4) 순창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107
5) 순창군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8
6) 순창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0
7) 순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112
8) 순창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113
9) 순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4
10) 순창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16
2. 조례제정을 통한 정책제안 검토	119
1) 순창군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	119
2) 순창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120
3) 순창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121
4) 순창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122
5) 순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4
6) 순창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26
7) 순창군 임신 및 가임지원 조례	127

I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향

1) 연구의 필요성

□ 조례의 양적 성장

- 지방분권 2.0으로 분권화의 흐름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율하는 조례의 제·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조례는 민주적 선출과정을 통해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권’에 따 제정하는 입법적 수단으로, 지자체의 정책환경과 시의성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법령체계 내 일부로써 체계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조례 정비의 필요성 제고

- 상위법령의 내용이 개정되면서 실무 관련 사항을 개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으면서 규제개혁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변화가 주민들에게 반영되지 못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례 등 적법성 측면에서 흠결이 있는 조례가 확인되기도 하며,
- 상위법령의 용어변경 등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의 인용이 잘못된 조례, 일본식 한자어나 불필요하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 등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도 다수 확인되고 있는 상황임.

2) 연구의 방향

□ 전북 순창군 조례 제·개정 현황 확인 및 정비 필요성 점검

- 이하에서는 현행 조례의 편장 구성과 제개정시기를 기준으로 전북 순창군 조례의 특성을 확인하고
- 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반영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필수정비조례의 정비현황을 확인하고, 미정비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별 미정비필수조례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함.
- 의회 위원회 및 전북 순창군 사업부서를 기준으로 소관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적법성 및 입법체계 내에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를 통해 전북 순창군 지역의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전북 순창군의회가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있는 구현을 통해 선진적 지방의정의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2. 연구계획

1) 연구개요

- 전북 순창군 조례의 특성 및 현황 분석
- 필수조례 정비상황 점검 및 미정비 조례에 대한 정비방향 점검
- 위원회별 개정조례 점검 및 개정의 쟁점 분석
- 신규조례 제정 제안

2) 연구범위

- 과업명 : 전북 순창군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
- 대상 : 전북 순창군 조례
- 내용적 범위 : 전북 순창군 조례의 현황 분석 및 제개정 필요성 점검

3) 연구 내용

- 전북 순창군 조례의 현황 및 특징 분석
 - 전북 순창군 조례 편장별 조례 구성 분석
 - 전북 순창군 위원회별 조례 현황 파악
- 필수정비대상 조례 점검
 - 필수정비조례 정비현황 검토
 - 미정비조례 분석 및 정비방향 제안
- 위원회별 조례 제·개정 필요성 분석

- 조례 정비 기준 제안
- 정비기준별 정비대상 조례 점검 및 정비방안 제안
- 전북 순창군 신규 자치법규 입법 가능성 검토
- 최근 법 개정 동향을 반영한 자치법규 제·개정 방안 제안
- 전북 순창군 맞춤형 신규 자치법규 제안

4) 연구방법

- 법령사이트 활용 조례 정비현황 분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법령정보사이트 활용
 - 현행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필수조례 정비사항 등을 확인
 - 전국 최근 조례 제·개정 현황 분석을 통해 우선정비 조례 개선방안 연구
- 조례 입안을 위한 조사 및 분석
 - 최근 조례 제·개정 현황을 검토해 조례 입안 경향 분석
 - 타자치단체 우수 조례 조사를 통해 전북 순창군 조례 적용 검토

II 순창군 조례현황

1. 순창군 조례 운영 현황 점검

1) 전북 순창군 자치법규 현황

□ 전북 순창군 현행 및 폐지 자치법규 수

- 전북 순창군 현행 자치법규는 2024년 11월 말 현재 조례 450개, 규칙 104개, 훈령 62개, 예규 15개 등 모두 631개임.
- 폐지된 전북 순창군 자치법규는 조례 58개, 규칙 26개, 훈령 28개, 예규 4개 등 116개임.

표 1. 전북 순창군 자치법규 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총합
현행법규	450	104	62	15	0
폐지된법규	58	26	28	4	0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_자치단체별 자치법규 (<https://www.elis.go.kr/locgovair/locgovCIAirList> / 검색 기준일: 2024.11.30¹⁾)

□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수와의 비교

- 전북 순창군 자치법규 수를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수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자치법규의 총 개수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익산시로 모두 854개의 자치법규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다음은 군산시로 830개였고, 이어서 전주시(800개) 순이었음.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자치법규의 총 개수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무주군으로 557개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음.
- 전북 순창군의 자치법규 수는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번째로 많았으며, 광역 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자치법규 총 수에서 전북

1) 착수보고 기준일이었던 2024년 9월4일 이후인 2024년 9월13일, 9월30일, 10월5일, 11월15일, 11월29일에 각각 6개, 2개, 13개, 5개, 2개 자치법류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수정 반영함.

순창군과 가장 유사한 지자체는 부안군(642개)와 진안군(648개) 등이었음.

□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조례 수와의 비교**

-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조례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익산시로 602개였으며, 다음은 군산시로 588개였음.
- 전북 순창군의 조례 개수는 전북도내에서 10번째로 많았으며, 자치법규 중 조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71.3%였음.

표 2.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수 및 조례의 비중

자치단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자치법규 총수	자치법규 중 조례비중
총계	7909	1724	1141	225	10999	71.9%
전북특별자치도	911	152	112	34	1209	75.4%
1 익산시	602	132	98	22	854	70.5%
2 군산시	588	146	81	15	830	70.8%
3 완주군	573	115	63	5	756	75.8%
4 전주시	572	132	85	11	800	71.5%
5 남원시	549	104	75	22	750	73.2%
6 정읍시	529	141	89	21	780	67.8%
7 김제시	497	103	74	8	682	72.9%
8 고창군	471	91	81	11	654	72.0%
9 부안군	465	98	64	15	642	72.4%
10 순창군	450	104	62	15	631	71.3%
11 진안군	446	120	67	15	648	68.8%
12 장수군	430	99	75	8	612	70.3%
13 임실군	425	96	58	15	594	71.5%
14 무주군	401	91	57	8	557	72.0%

2) 전북 순창군 자치법규 편장 구성

□ **전북 순창군 자치법규 편장 구성 및 법규 수**

- 전북 순창군 자치법규는 편장 구성은 총 23개 편 10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은 부서명에 장은 팀명에 각각 대응함.
- 편장별 자치법규의 수는 다음과 같음.
- 전체 107개 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자치법규로 구성된 장은 제3편 행정 편의 제1장 행정 장으로 49개의 자치법규로 구성됨. 이어 제2편 기획예산실 제3

장 감사법무 장(29개) 순임.

- 23개 편 가운데에는 제3편 행정편의 자치법규 수가 97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제2편 기획예산실 편의 자치법규가 65개, 제4편 주민복지과의 자치법규가 45개 순임.
- 자치법규가 전혀 없는 장(팀)은 제2편 기획예산실 제6장 세종사무와 제7장 경관조성, 제5편 건강장수와 제3장 치유연수, 제18편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제2장 진료, 제20편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제3장 기술보급, 제4장 유기농자재 등임.

표 3. 전북 순창군 편장별 자치법규 수

편	장	수	편	장	수	편	장	수
제1편 의회 사무과	제1장 의정	27	제8편 문화관 광과	제3장 관광자원개발	1	제16편 상하수도과	제1장 수도행정	6
	제2장 의사	6		제4장 문화관광시설	5		제2장 상수도	3
제1장 기획	22	제5장 도서관운영T/F		3	제3장 하수도		5	
제2편 기획 예산실	제2장 예산	6	제6장 문화유산	9	제17편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제1장 보건행정	5	
	제3장 감사법무	29	제1장 민원	10		제2장 건강증진	8	
	제4장 공보	5	제2장 지적	2		제3장 예방의약	6	
	제5장 평가통계	3	제3장 토지	2		제4장 지역보건	4	
	제6장 세종사무	0	제4장 건축	10		제5장 감염병대응	1	
	제7장 경관조성	0	제5장 지적재조사	2	제1장 원무	2		
	제3편 행정 과	제1장 행정	49	제10편 경제교 통과	제1장 지역경제	12	제18편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제2장 진료
제2장 총무		26	제2장 기업유치		5	제3장 치매예방		3
제3장 인재 평생 교육		8	제3장 일자리창출		5	제4장 건강검진		1
제4장 대외협력		10	제4장 교통행정		19	제19편 농업기술센 농정	11	

제4편 주민 복지과	제5장 정보통신	4	제11편 안전재난과	제1장 안전총괄	10	터 농업축산과	제2장 농산물유통	13
	제1장 희망복지	6		제2장 사회재난	3		제3장 원예특작	3
	제2장 통합보장	7		제3장 자연재난	13		제4장 축산경영	3
	제3장 여성가족친화	8		제4장 하천	2		제5장 축산방역	5
	제4장 아동복지	10	제12편 건설과	제5장 중대재해	5	제20편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제1장 친환경농업	2
	제5장 드림청소년	5		제1장 건설행정	10		제2장 과학영농	2
	제6장 장애인복지	9		제2장 도시계획	4		제3장 기술보급	0
제5편 건강 장수과	제1장 장수특구	5	제13편 농촌활력과	제3장 지역개발	2	제21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제4장 유기농자재	0
	제2장 건강산업	2		제4장 농업기반	4		제1장 지도육성	2
	제3장 치유연수	0	제1장 농촌활력	2	제2장 농업교육		2	
	제4장 노인복지	10	제2장 농촌주거	2	제3장 작물기술		0	
	제5장 노인시설	10	제3장 소도읍개발	3	제4장 소득경영		0	
제6편 인구 정책과	제1장 인구정책	2	제14편 산림공원과	제4장 공공주택	3	제22편 장류산업사업소	제5장 농촌자원	2
	제2장 청년정책	2		제5장 전원마을 T/F	3		제6장 농기계관리	4
	제3장 도농교류	2		제1장 산림경영	1		제1장 장류특구	8
	제4장 귀농귀촌	3		제2장 산림보호	1		제2장 미생물산업	2
제7편 재무과	제1장 세정	9		제3장 산촌소득	1		제3장 장류산업	6
	제2장 경리	7		제4장 공원관리	4		제4장 연구검사	3
	제3장 징수	5		제5장 자연휴양림	1		제5장 음식문화정책	1

	제4장 재산관리	12	제15편 환경위 생과	제1장 환경정책	7	제23편 체육진흥사 업소	제1장 체육진흥	5
	제5장 세입	2		제2장 자원순환	8		제2장 스포츠마케 팅	4
제8편 문화 관광과	제1장 문화예술	8		제3장 환경지도	2		제3장 체육시설	3
	제2장 관광마케 팅	4	제4장 위생	6				

□ **편장별 조례 구성**

- 편장별 조례의 수는 다음과 같음.
- 자치법규의 수가 49개로 가장 많았던 제3편 행정 제1장 행정의 조례 수는 25개로 자치법규 중 조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불과해 전체 자치법규 중 조례가 차지하는 비중 71.1%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음.
- 자치법규의 수가 96개였던 제3편 행정 편의 조례 수는 55개로 자치법규 중 조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57.3%였음.

표 4. 전북 순창군 편장별 조례 수

편	장	수	편	장	수	편	장	수
제1편 의회사무과	제1장 의정	13	제8편 문화 관광 과	제3장 관광자원개발	1	제15편 환경위생과	제2장 자원순환	8
	제2장 의사	5		제4장 문화관광시설	5		제3장 환경지도	2
제2편 기획예산실	제1장 기획	17		제5장 도서관운영T/F	3		제4장 위생	3
	제2장 예산	5	제6장 문화유산	6	제1장 수도행정	3		
	제3장 감사법무	10	제1장 민원	3	제2장 상수도	2		
	제4장 공보	2	제2장 지적	1	제3장 하수도	3		
	제5장 평가통계	1	제3장 토지	2	제1장 보건행정	4		
제3편 행정과	제1장 행정	26	제4장 건축	8	제17편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제2장 건강증진	8	

	제2장 총무	9		제5장 지적재조사	2		제3장 예방의약	6
	제3장 인재평생 교육	7	제10 편 경제 교통 과	제1장 지역경제	10		제4장 지역보건	4
	제4장 대외협력	10		제2장 기업유치	3		제5장 감염병대 응	1
	제5장 정보통신	3		제3장 일자리창출	4	제18편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제1장 원무	2
	제1장 희망복지	6		제4장 교통행정	15		제3장 치매예방	3
제4편 주민복지과	제2장 통합보장	6	제11 편 안전 재난 과	제1장 안전총괄	7	제19편 농업기술센 터 농업축산과	제4장 건강검진	1
	제3장 여성가족 친화	6		제2장 사회재난	3		제1장 농정	9
	제4장 아동복지	10		제3장 자연재난	10		제2장 농산물유 통	9
	제5장 드림청소 년	3		제4장 하천	2	제3장 원예특작	2	
	제6장 장애인복 지	8		제5장 중대재해	4	제4장 축산경영	3	
					제1장 건설행정	8	제5장 축산방역	4
							제20편 농업기술센 터 친환경농업 과	제1장 친환경농 업
제5편 건강장수과	제2장 건강산업	2	제12 편 건설 과	제2장 도시계획	4	제21편 농업기술센 터 농업기술과	제2장 과학영농	2
	제4장 노인복지	9		제3장 지역개발	2		제1장 지도육성	2
	제5장 노인시설	7		제4장 농업기반	4	제2장 농업교육	1	
제6편 인구정책과	제1장 인구정책	2	제13 편 농촌 활력	제1장 농촌활력	2	농업기술과	제5장 농촌자원	2
	제2장 청년정책	2		제2장 농촌주거	1			

	제3장 도농교류	2	과	제3장 소도읍개발	2	제22편 장류산업사 업소	제6장 농기계관 리	3
	제4장 귀농귀촌	2		제4장 공공주택	3		제1장 장류특구	7
제7편 재무과	제1장 세정	5	제14 편 산림 공원 과	제5장 전원마을 T/F	2	제23편 체육진흥사 업소	제2장 미생물산 업	2
	제2장 경리	4		제1장 산림경영	1		제3장 장류산업	4
	제3장 징수	3		제2장 산림보호	1		제4장 연구검사	2
	제4장 재산관리	5		제3장 산촌소득	1		제5장 음식문화 정책	1
	제5장 세입	2		제4장 공원관리	4		제1장 체육진흥	3
					제5장 자연휴양림		1	제2장 스포츠마 케팅
제8편 문화관광과	제1장 문화예술	8	제15 편 환경 위생 과	제1장 환경정책	6		제3장 체육시설	2
	제2장 관광마케 팅	2						

3) 제·개정시기별 조례 현황

□ 시기 구분 기준과 현황

-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1년 3월에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같은해 6월에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치러져 1991년 7월 4년의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후 4년 주기로 선거가 이루어져 7월에 의회의 임기가 갱신되었음.
- 현행 전북 순창군 조례를 제개정시기가 속한 의회 임기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5와 같음. 해당 제개정시기는 최종 제개정시점으로 당해 회기에 제 개정된 조례의 총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회기에 제개정 된 이후 다시 개정된 적이 없는 조례의 수를 의미함.

- 전북 순창군 조례 가운데 제 개정시점이 가장 오래된 조례는 제5대 의회 임기 중인 2008년 2월 15일 제·개정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이를 포함해 제5대 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는 ‘순창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2009년 12월 30일)’ 등 13건임.
- 2024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이번 회기인 제9회 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는 425건이었으며, 이전 제8대 의회의 임기인 2018년 7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가 111건임.

표 5. 제·개정시기별 전북 순창군 조례 현황

제·개정시점	조례수	조례수
5대	2006.7~2010.6	13
6대	2010.7~2014.6	35
7대	2014.7~2018.6	47
8대	2018.7~2022.6	111
9대	2022.6.~	425

2. 순창군 필수조례 정비 현황 점검

1) 필수조례의 개념과 정비 필요성

□ 필수조례의 개념

- 필수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조례를 지칭함.
-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자치입법권에 따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조례와 달리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상위법령이 규율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규율하기 위해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조례임.
- 국가법령체계 소관부처인 법제처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필수조례 정비 현황을 국가법령정보시스템²⁾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들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합동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필수조례 정비 필요성

- 지자체에서 필수조례를 적기에 정비하는 것은 규제개혁 등 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주민의 권익침해소지를 방지하고,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개선 효과를 지자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2)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필수조례정비현황
<https://www.law.go.kr/ordinDelArealistPop.do>

2) 전북 순창군 필수조례 정비현황 검토

□ 2024년 10월 기준 전북 순창군 필수조례 정비율 84.9%, 도내 7 번째³⁾

- 2024년 10월 현재 전북 순창군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84.9%로 정비대상 259건 가운데 220건의 정비가 완료되고, 39건이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6.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초지자체 필수조례 정비율

지자체	정비율	정비완료	정비대상
전주시	88.30%	273	309
무주군	86.20%	224	260
군산시	86.00%	228	265
부안군	85.40%	222	260
정읍시	85.20%	225	264
고창군	85.00%	221	260
순창군	84.90%	220	259
완주군	84.60%	220	260
진안군	84.60%	219	259
익산시	84.20%	224	266
남원시	84.00%	221	263
김제시	83.90%	219	261
임실군	82.90%	213	257
장수군	82.40%	215	261
본청	80.00%	292	365

□ 전북 순창군 미정비 필수조례 내역

- 2024년 10월 기준으로 39건인 전북 순창군의 미정비 필수조례는 표7.과 같음.
- 이 가운데 상위법령이 시행된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정비대상은 ‘사이버업무규정’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건축법 시행령’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2건이었음.

표 7. 전북순창군 미정비 필수정비조례

법령명	법령조문	공포일	시행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2016. 11. 22	2016. 11. 30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2022. 2. 3	2022. 8. 4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2022. 2. 3	2022. 8. 4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3. 9. 12	2024. 3. 13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2015. 8. 11	2016. 8.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2021. 11. 30	2022. 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2022. 2. 28	2022. 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2023. 5. 16	2023. 11. 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2023. 5. 16	2023. 11. 17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2015. 12. 29	2015. 12.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017. 9. 19	2017. 9. 2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2017. 7. 17	2017. 7. 17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2021. 12. 7	2022. 12. 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2024. 3. 5	2024. 3.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2021. 12. 21	2022. 6. 22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2016. 12. 2	2017. 12.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2017. 10. 31	2017. 10. 31
온천법 시행령	제22조(수수료)	2021. 6. 22	2021. 6. 23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2017. 7. 26	2017. 7.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2018. 12. 11	2019. 6. 1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2021. 10. 19	2022. 1. 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의신청 등)	2021. 10. 19	2022. 1. 13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2022. 4. 26	2022. 10. 27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2016. 12. 30	2016. 12. 3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2017. 7. 26	2017. 7. 26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2022. 12. 27	2022. 12.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2023. 3. 14	2023. 3. 14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2021. 1. 12	2022. 1. 13
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2021. 1. 12	2022. 1. 13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2021. 1. 12	2022. 1. 13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2021. 1. 12	2022. 1. 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 운영 등)	2021. 12. 16	2023. 7.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2021. 12. 16	2023. 7.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2021. 12. 16	2023. 7.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022. 1. 4	2022. 7. 5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2023. 3. 28	2023. 3. 28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2022. 4. 27	2022. 4. 28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2018. 1. 16	2018. 1. 16
초지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2016. 12. 2	2016. 12. 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_자치법규 지자체별 정비현황

□ 전북 순창군 미정비 필수조례 내역 변동

- 본 용역 중간보고 이후인 2024년 11월 기준 전북 순창군의 미정비 필수조례는 26건으로 중간보고서 작성 기준 시점인 2024년 10월의 39건에서 아래 표8의 음영처리된 13건이 미정비에서 정비완료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됨.
- 이 13건 가운데 중간보고에서 미정비사유를 점검한 조례 위임조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2건과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등 3건이며, 공통적으로 순창군에 해당 조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법제처의 집계에서 누락되고 있었던 사례임.
- 따라서 이같은 변동은 법제처의 집계 조정의 결과인 것으로 추정되며 중간

보고 이후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변동내역을 반영해 작성하되, 중간보고 이전 작성분은 삭제하지 않음.

표 8. 전북순창군 미정비 필수정비조례 변동내역

법령명	법령조문	공포일	시행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2016. 11. 22	2016. 11. 30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2022. 2. 3	2022. 8. 4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2022. 2. 3	2022. 8. 4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3. 9. 12	2024. 3. 13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2015. 8. 11	2016. 8.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2021. 11. 30	2022. 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2022. 2. 28	2022. 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2023. 5. 16	2023. 11. 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2023. 5. 16	2023. 11. 17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2015. 12. 29	2015. 12.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017. 9. 19	2017. 9. 2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2017. 7. 17	2017. 7. 17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2021. 12. 7	2022. 12. 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2024. 3. 5	2024. 3.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2021. 12. 21	2022. 6. 22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2016. 12. 2	2017. 12.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2017. 10. 31	2017. 10. 31
온천법 시행령	제22조(수수료)	2021. 6. 22	2021. 6. 23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2017. 7. 26	2017. 7.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2018. 12. 11	2019. 6. 12
주만조례발안에 관한 법	제5조(주만조례청구 요건)	2021. 10. 19	2022. 1. 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의산청 등)	2021. 10. 19	2022. 1. 13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2022. 4. 26	2022. 10. 27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2016. 12. 30	2016. 12. 3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2017. 7. 26	2017. 7. 26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2022. 12. 27	2022. 12.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2023. 3. 14	2023. 3. 14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2021. 1. 12	2022. 1. 13
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2021. 1. 12	2022. 1. 13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2021. 1. 12	2022. 1. 13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2021. 1. 12	2022. 1. 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2021. 12. 16	2023. 7.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2021. 12. 16	2023. 7.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2021. 12. 16	2023. 7.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022. 1. 4	2022. 7. 5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2023. 3. 28	2023. 3. 28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2022. 4. 27	2022. 4. 28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2018. 1. 16	2018. 1. 16
초지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2016. 12. 2	2016. 12. 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_자치법규 지자체별 정비현황

Ⅲ 순창군 조례 정비방안

1. 순창군 조례 정비방안

□ 점검대상 조례 및 분류

-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24년 10월 기준 현행 전북 순창군 조례 446건 가운데 현 9대 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는 319건임. 이들 조례를 제외한 12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을 점검함.

□ 점검 기준 및 정비방향

- 입법 부작위에 의한 주민권익의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정비 필수조례 및 상위법의 제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점검함.
- 체계정당성과 입법체계 내에서의 체계성확보를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변경사항, 소관기관 관련 변경사항 등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들을 점검하여 정비를 제안함.
- 군정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위원회관련 조례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
- 현재 순창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조례 미비로 추진근거를 갖지 못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근거와 투명한 기준마련을 위한 신규조례제정을 제안함.
- 순창군의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제안을 위해 신규조례 제정을 제안함.

2. 미정비 필수정비조례 정비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 위임조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위임내용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제1항)하고 해당 센터에 ‘건강가정사’ 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각 지자체 조례로 규율하도록 함. (제2,3,4항)

□ 순창군 현황

- 현재 순창군에서는 순창군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의 연혁에 따르면⁴⁾, 2012년에 사) 한울안운동이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4) <https://sunchang.familynet.or.kr/center/lay1/program/S295T315C317/history/list.do>

운영을 시작했고, 2022년에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순창군가족센터로 개칭함.

-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 조례 없이 조직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타 지지체 현황 (정비대상 242개 지자체 중 159개 정비완료)

- 전북도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장수군, 남원시, 완주군,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등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주군, 전주시, 고창군 등이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 지원법에 따른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정비방향

- ‘순창군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신설해 입법체계상 필수적인 현 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위임조문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위임내용**

- 건물 및 공사중단 건물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건축물관리조례 등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입법체계가 마련되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전반의 관리기반이 구축되고 안전점검이 의무화됨.
-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 반드시 허가권자(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로 규율하도록 한 것으로 ‘일정반경’의 내용, 주변시설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규율대상 도로폭 기준, 기타요건 등에 대해 다수의 지자체에서 ‘건축물관리조례’에 해당 내용을 정비운영 중임.

□ **순창군 현황**

- 순창군도 건축물관리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 제30조 제2항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 **타 지자체 현황 (정비대상 228개 지자체 중 107/113개 정비완료)**

-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장재 가장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건축물만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구례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정비방향

- 현행 건축물관리조례에 해당내용을 규율하는 조문을 보완해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위임조문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생략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생략)

2. (생략)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

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하 생략)

□ 위임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조례로써 상세한 내용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 순창군 현황

- 해당 내용에 대해 순창군 건축조례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는 2024년 9월13일 개정되어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법제처 자료에서 미정비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4)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위임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②, ③, ④, ⑤생략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위임내용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지자체 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즉 감사요청의 요건 및 예외, 감사실시 절차 등에 관해 조례로 규율하도록 하며, 통상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조례’, 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주택조례 ‘ 등을 통해 반영됨.

□ **순창군 현황**

- 순창군 공동주택관리조례가 2024년 4월9일 개정되어 해당 조례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분리되어 제정, 운영 중임.
- 그러나 두 조례 모두 감사와 관련한 조문은 없음.

□ **타 지자체 현황(정비대상 243개 지자체 중 208개 정비완료)**

-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27조(감사 대상)

① 공동주택 감사대상은 법 제93조에 정한사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미실시 사유를 명기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 요청) 제26조에 따른 감사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별지 제14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요청인은 각 세대 당 1명으로 한다.

제29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감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대상 및 범위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반 구성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감사계획 통보)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감사반 편성·운영)

-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편성·운영한다.
- ② 감사반장은 주택행정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부서 공무원과 타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이 때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감사관을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전문 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감사실시)

-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29조의 절차에 따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기타 특기사항

제35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 ① 시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사법기관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정읍시 주택조례

제25조(공동주택 감사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금횡령·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비방향**

- 상위법이 정한 감사실시의 취지를 실효성있게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감사요청의 요건 및 감사운영 방법에 대해 순창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음.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 **위임조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생략)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위임내용**

공유수면은 지목이 구거, 하천, 제방으로 돼있는 지번 중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번을 의미하며, 상위법에 따라 공유수면(바다, 바닷가, 하천, 호, 구거등)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준설, 굴착 및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매년 6월 정기 점용료를 부과하며 정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류 관리됨.

□ **순창군 현황**

- 순창군은 공유수면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음.

□ **타 지자체 현황 [정비대상 241개 지자체 중 93개 정비완료/정비대상 243개 지자체 중 92개 정비완료]**

-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 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 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 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 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5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 신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수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 **정비방향**

- 상위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해 조례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위임조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①, ②, ③, ④, ⑤ (생략)
-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⑧, ⑨, ⑩, ⑪ (생략)
-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

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위임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및 운영방법,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 **순창군 현황**

-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조례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이 규율되어 있음.
- 특히 2024년 10월15일 개정을 통해 주요 위임사항인 운행범위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문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개정되었음.

개정전	개정후 (2024.10.15.)
<p>제2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도 조례 제17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p>	<p>제2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법 제16조제6항 및 제1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 2. 광주광역시 3. 군수가 정하는 그 외 지역 <p>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등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

	<p>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p> <p>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p>
<p>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관리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 센터를 설치·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출발지 도착지 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p>

□ **정비방향**

- 개정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고지

7)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위임조문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② (생략)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임내용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

순창군 현황

○ 순창군 주민 영양관리 조례(2022.12.06.)를 통해 위임사항이 규율되어 있음.

정비방향

○ 조례 운영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고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위임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②,③(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위임내용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 의제의 협의를 위

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

순창군 현황

- 순창군 계획조례(2023.12.15. 개정)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없음

타 지자체 현황(정비대상 161개 중 89개 지자체 정비완료)

- 고창군 계획조례

제29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고 서면협의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비방향

- 상위법의 위임취지에 따라 계획조례에 반영 개정할 필요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위임조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① (생략)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

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략)

□ 위임내용

공공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기여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

□ 순창군 현황

- 현재 순창군에 해당 위임조례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순창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규정은 현재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칭되어 국가공무원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써 규정해야 하는 사안임.

□ 타 지자체 현황 [정비대상 243개 중 157개 지자체 정비완료]

- 부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임실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정비방향

- 조례 제정 필요

10)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 위임조건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②(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위임내용

공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순창군 현황

- 현행 ‘순창군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4.07.15. 개정)’ 제17조~제20조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의 제정시점인 2014년부터 관련 조문이 있었으나 미정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임.

□ 타 지자체 현황 [정비대상 243개 중 115개 지자체 정비완료]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등

□ 정비방향

- 조례 운영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고지

11)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위임조문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이하 생략

위임내용

상위법인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에서 국가정보원이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해 예방 및 대응해야 하는 사이버안보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규정

순창군 현황

- 2024년 순창군 재정공시 기준으로 순창군의 출자기관은 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주), 농업회사법인한국절임(주) 등 2개 기관이며, 출연기관은 순창군육천장학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 재단법인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등 4개 기관임.

타 지지체 현황(정비대상 243개 중 0개 지자체 정비완료)

- 필수조례 위임조문인 사이버 안보규정 제7조 2의2호는 2024년 3월 5일 신설됨. 아직 관련 조례를 정비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정비방향

- 순창군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기관을 판단해 관련 조례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음.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위임조문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②, ③ 생략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위임내용

순창군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 **순창군 현황**

- 현행 ‘순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는 제11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타 지자체 현황(정비대상 243개 중 70개 지자체 정비완료)**

-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부안군, 완주군, 장수군, 진안군,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등이 정비완료로 집계되고 있으며, 순창군, 무주군, 임실군 등 3개 지자체가 미정비로 집계됨.
- 정비완료로 집계되는 정읍시의 경우 해당 조례인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내용이 확인하듯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 포함)순창군의 해당 조례 조문의 내용과 거의 같으며, 다수의 지자체 조례가 유사함.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

- 순창군은 이미 조례로써 운영하고 있음에도 미정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임.

□ 정비방향

- 조례 운영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고지

13)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 위임조문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위임내용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 순창군 현황

- 2024년 12월 기준으로 순창군은 표11과 같이 해충 방제와 관련된 세부사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을 별도의 예산편성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위임조문에 따라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을 규율하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음.

표 11 . 순창군 해충 방제관련 세부사업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전환사업)	20	0	10	10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64	32	0	32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22	7	0	15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5	1	0	3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25	62	19	44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자본)	3	2	0	1
일반병해충	20	10	1	8

□ 타 지자체 현황(정비대상 243개 중 119개 지자체 정비완료)

-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 정비방향

- 신규 조례 제정 필요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 위임조문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이하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위임내용

액화천연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신청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

는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순창군 현황

- 순창군의 현행 조례 중 가스사업 운영과 관련한 조례는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일하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

타 지자체 현황(정비대상 228개 중 182개 지자체 정비완료)

-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부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등

정비방향

- 관련 조례 제정 필요

15) 온천법 시행령 제22조(수수료)

위임조문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2. 3. 4. 5. 생략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이하 생략

위임내용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시 수수료 납부 기준

순창군 현황

- 순창군에는 온천법을 상위법령으로 하는 ‘순창군 온천급수 및 관리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수수료에 관한 조문은 없음.
- 그 외에도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순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와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들이 있으나 역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없음.
- 순창군의 ‘순창군 지하수 조례’에도 경남 하동군의 ‘하동군 지하수조례’ 제4조의 내용과 유사한 수질검사 수수료 관련 조문이 있으나 미정비로 분류되고 있음.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타 지지체 현황(정비대상 228개 중 1개 지자체 정비완료)

- 정비대상 228개 지자체 가운데 경남 하동군이 유일하게 정비완료로 집계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는 ‘하동군 지하수 조례’ 임.
- ‘하동군 지하수 조례’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내용은 온천수를 보조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항목에 의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성분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용시설은 전액 보조한다.

1. 수질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생활용수(음용수에 한정한다)인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상수도과 같은 「수도법」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지하수와 「먹는물관리법」에서 시행하는 생수공장은 제외).
5. 그 밖에 군수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정비방향

- 현재 정비완료로 분류된 하동군 사례와 현행 순창군 지하수 조례를 근거로 정비현황을 법제처에 고지
- 또는 온천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제정된 ‘순창군 온천급수 및 관리조례’에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와 수수료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추천)

16)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위임조문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생략

위임내용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순창군 현황

-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에서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의 관리책임에 관해 규율하고 있음.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①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②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타 지자체 현황(정비대상 228개 중 198개 지자체 정비완료)

- 충북 옥천군의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나 전북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관리조례처럼 임시로 운영되는 특정시장의 운영기준을 다수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음.
- 정비완료로 분류되고 있는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의 내용과 현행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의 내용이 동일함.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①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②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정비방향

- 현행 조례운영현황을 법제처에 고지
- 순창군 관내 개별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 위임조문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이하 생략

□ 위임내용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기간, 조건 등에 관한 사항

□ 순창군 현황

- 현행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위임조문인 법 17조의 2 제3항에 따른 갱신시 갱신기간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타 지자체 현황(정비대상 226개 중 214개 지자체 정비완료)

- 정비완료로 분류된 부안군의 경우 해당 조례인 부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의2 제2항을 통해 위임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위 순창군 현행 조례의 내용과 차이가 없음.

□ 정비방향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따라야 한다.

- 현행 조례운영현황을 법제처에 고지

18)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 위임조문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①, 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위임내용

조사구역별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 현황실태조사 실시 방법

□ 순창군 현황

- 현재 순창군에서는 주차장과 관련해 순창군 주차장 조례, 순창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순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순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타 지지체 현황(정비대상 161개 중 89개 지자체 정비완료)

- 고창군 주차장 조례 제7조
-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등

정비방향

- 현행 순창군 주차장 조례에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개정

1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위임조문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임내용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의무위반 등으로 면직, 중도포기 또는 탈락 등을 하게 된 경우 위탁교육 훈련 경비 반납기준 및 방법

순창군 현황

- 공무원 교육지원, 공무원 장학금 지급,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 지원 또는 반납에 관한 조례 등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

타 지지체 현황(정비대상 260개 중 42개 지자체 정비완료)

- 부안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제8조
-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제9조
- 진천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등

정비방향

- 관련 조례 신규 제정 필요

20)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위임조문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이하 생략

위임내용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구상권 청구 및 인사상 징계, 형사상 고소·고발, 민사상 소송대상이 된 공무원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지자체 규칙에 위임)

□ **순창군 현황**

- 순창군 적극행정운영조례 제6조(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으나 위임조문인 제4항의 내용에 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음.

□ **타 지자체 현황(정비대상 261개 중 12개 지자체 정비완료)**

- 장수군 적극행정 추진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정비완료로 분류된 진안군에서는 순창군과 마찬가지로 진안군 적극행정운영조례 제11조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 내용을 기술하고 제4항에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진안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지원체계,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정비방향**

- 현행 순창군 적극행정 조례 제6조에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조문을 추가하고, 장수군, 진안군의 적극행정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신규 제정할 필요가 있음.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위임조문**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 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생략

위임내용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해 적용하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경감률(2025년 12월31일 한시 적용)

순창군 현황

- 현행 순창군 군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위임조문을 감위법으로 하는 감면율을 명시하고 있음.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타 지체 현황(정비대상 129개 중 15개 지자체 정비완료)

- 정비완료로 분류된 전주시, 정읍시의 시세감면조례, 완주군, 장수군의 군세

완주군 군세감면조례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감면조례에서 위임조문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조문의 내용은 현행
순창군 군세감면조례 제8조의 내용과 같음.

정비방향

- 현행 조례 운영내용을 법제처에 고지

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 운영 등)

위임조문

제35조(의정비심의회 운영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임내용

의정비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순창군 현황

- 관련 조례 없음

타 지지체 현황(정비대상 161개 중 89개 지자체 정비완료)

-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정비방향

- 관련 조례 신규제정 필요

2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위임조문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②, ③,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위임내용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순창군 현황

○ 관련 조례 없음

타 지자체 현황(정비대상 243개 중 203개 지자체 정비완료)

-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
-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 등

정비방향

○ 순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필요

2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위임조문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위임내용

지역상생구역 기준 중 지자체별 임대료 비율 상승의 하한 기준

순창군 현황

○ 관련 조례 없음

□ 타 지자체 현황(정비대상 225개 중 72개 지자체 정비완료)

○ 완주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정비방향

○ 지역상권 상생 관련 조례 제정 필요

25)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 위임조문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위임내용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

□ 순창군 현황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관련 조례 및 조문 없음

□ 타 지자체 현황(정비대상 228개 중 116개 지자체 정비완료)

○ 임실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 **정비방향**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관련 내용을 규율하는 개별조례로써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또는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면서 관련 조문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함.

26) 초지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 **위임조문**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위임내용**

공유지 대부료 기준

□ **순창군 현황**

-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대부료의 요율)에서 각각 당해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4 이상,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1 이상 등 4가지의 요율과 그 적용대상 재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3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채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4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연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7.05, 2019.06.28>
-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4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전북특별자치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 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법률에 따라 등록된 체육·사회단체이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8.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 정비완료로 분류된 지자체 조례의 내용과 적용된 요율 등 세부내역은 다르지만 구성과 개요는 대동소이함.

□ 타 지지체 현황(정비대상 161개 중 89개 지자체 정비완료)

○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 제28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 ②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③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2. 취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 3. 삭제
-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⑤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3. 삭제
 -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 관할 구역에 이전하는 경우
 -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관할 구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 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등

정비방향

○ 현행 조례 운영내용을 법제처에 고지

3. 상위법의 주민권익보호 반영한 개정 필요성

□ 검토방향

- 사회의 변동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짐.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변화가 조례의 적절한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향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음.

1)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개정 필요 조례

□ 개정 필요성

-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제가 개편됨.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등급제에 기반한 공급자 중심의 일괄적 서비스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 종합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등급)에서 '심한 장애' (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됐으며, 기존 장애인 등급에 따라 제공되던 지자체의 자치법규 개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음.
- 순창군의 경우도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06.28 조례 제2515호)」를 통해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일부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조례가 있어 변경된 제도에 맞는 주민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개정필요 조례**

-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5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5.(생략)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시각은 4급)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제5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5.(생략)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2) 외국인처우에 관한 법령취지반영한 개정 필요

□ **개정 필요성**

- 거주 외국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인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는 제3조를 통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해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음.
- 관련 조례에 외국인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률과의 연계를 확보하고 상위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개정 필요조례

-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p>제4조(순창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p>제4조(순창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p>

3) ‘장애’ 오기로 권익보호 혼선초래 위험 시정 필요

□ 개정 필요성

-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 및 내부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신체적 요인 또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요인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대체됨.
- 한편 ‘장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로 보상 및 연금또는 보험금지급의 근거로써 장애등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장애와 장애를 구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해 제공되어야 할 복지서비스와 장애에 대한 보상 및 연금등의 내용이 각각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순창군 일부조례에서 ‘장해’ 및 ‘장해등급’을 ‘장애’ 및 ‘장애등급’과 혼동해 장해에 대한 보상 등의 상황에서 제도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함.

□ **개정필요 조례**

-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u>장애</u>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u>장해</u>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략) 1. 2.(생략)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u>장애</u> 를 입었을 때 4. (이하 생략)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략) 1. 2.(생략)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u>장해</u> 를 입었을 때 4. (이하 생략)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u>장애</u> 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이하 생략)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u>장해</u> 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이하 생략)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u>장애등급</u>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u>장해등급</u>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생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생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순창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순창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

○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7조(재해보상) ① (생략) 1. (생략)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생략)	제17조(재해보상) ① (생략) 1. (생략)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생략)

4) 공공요금 감면 관련 입법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 시정

□ 개정 필요성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6개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과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부 소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 8개 보훈관계법령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로서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유족 등에 대한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각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국방부는 입법취지에 따른 요금감면은 지자체의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감면대상은 8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원, 수목원, 박물관·미술관,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고궁·능원 및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등의 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됨. 각 시설별로 적용되는 감

면율은 다음과 같음⁵⁾

표 22.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별 이용료 감면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고궁 및 능원	100분의100
국공립공원	100분의100
독립기념관	100분의100
전쟁기념관	100분의100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100
국공립수목원	100분의100
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100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제외)	100분의50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50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원·박물관 등 공공 시설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단체장의 재량 등으로 모호하게 해석함에 따라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거부하는 등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관람료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만 명시되고 있음.
- 또한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14조를 통해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독립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만 명시되고 그 외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으며, 감면 적용도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이들 법령 및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공공시설 이용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등. 타법령내용도 유사함

례의 내용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이들 시설에 대한 순창명예군민, 순창생활군민에 대한 면제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필요 조례**

-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p>제8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신분 확인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 및 초등학교 이하 <개정 2023.04.28.>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증명서를 소지한 청소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개정 2019.08.30.제2523호>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증명서를 소지한 자 7. 신분증을 소지한 순창군민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8조(관람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창군민, 명예군민, 또는 순창생활군민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5세 이상 노인 및 초등학교 이하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19세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증명서를 소지한 청소년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이등급이 1~3급인 국가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이등급이 1~3급인 독립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p>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같은 법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p> <p>11.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1~3급인 5.18민주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p> <p>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상이등급이 1~3급인 특수임무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 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p> <p>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부상등급이 1~2급인 의사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p> <p>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군포로와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p> <p>1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	--

○ 순창군 용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p>제8조(체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p>	<p>제8조(체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한다.</p> <p>1. 순창군민, 명예군민, 또는 순창생활군민</p>

<p>2. 신분 확인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 및 초등학생 이하 <개정 2023.04.28.></p> <p>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증명서를 소지한 청소년</p> <p>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p> <p>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개정 2019.08.30.제2523호></p> <p>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증명서를 소지한 자</p> <p>7. 신분증을 소지한 순창군민</p> <p>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p> <p>3. 65세 이상 노인 및 초등학생 이하</p> <p>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p> <p>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19세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람</p> <p>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증명서를 소지한 청소년</p> <p>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이등급이 1~3급인 국가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p> <p>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이등급이 1~3급인 독립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p> <p>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p> <p>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같은 법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p> <p>11.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이 1~3급인 5.18민주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p> <p>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p>
--	--

	<p>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상이등급이 1~3급인 특수임무유공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 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한함)</p> <p>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부상등급이 1~2급인 의사상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p> <p>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군포로와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p> <p>1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	---

5) 장애차별적 편견을 갖게 하는 표현에 대한 개선

□ 개정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방지,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구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순창군 일부 조례에서는 특정 직무의 해임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의 장애는 직무수행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표현은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음.
-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편견의 위험과 해석을 남용할 위험을 최소화하며 해임·해촉의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대체

할 필요가 있음.

□ 개정 필요 조례

○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제1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p>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p>	<p>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단원이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p>

○ 순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p>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p>	<p>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p>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p>

○ 순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p>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p>	<p>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p>

○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p>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p>	<p>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p>

<p>할 수 있다.</p> <p>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p>	<p>할 수 있다.</p> <p>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p>
--	---

○ 순창군 경관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p>제33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③,④ 생략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p>	<p>제33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③,④ 생략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p>

○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p>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p>	<p>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p>

○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p>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p>	<p>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p>

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

○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하 생략)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순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26조(임기 및 해촉) ① 생략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이하 생략)	제26조(임기 및 해촉) ① 생략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순창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

○ 순창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9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제9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하 생략)

4. 상위법령 개정 및 변경에 따른 정비

□ 검토방향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 개정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 해석에 있어서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령 및 조문이 인용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음.

1) 순창군 계획조례

□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도시계획
- 최초 제정: 2003.08.11 조례 제1693호
- 현행 조례: 2023.12.15 조례 제2846호
- 조례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 필요이유

- 국가문화재정책의 변화에 따라 인용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폐지되고 2024년 5월 17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년 9월 15일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관련 입법체계가 변경됨.
 - 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 관련 조문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지정문화유산’ 관련 조문으로 변경됨.
 - 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등록문화재’ 관련 조문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등록문화유산’ 관련

조문으로 변경됨.

- 인용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월18일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변경됨.
 - 한편 제2조 제8호는 ‘특정유해물질’의 정의에 관한 조문으로 제명 변경 전후 내용이 같으므로 조문번호의 수정은 불필요함.
-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근거조문으로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동법 제141조(회계의 구분)으로 변경됨

□ **현행조문· 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57조의2(건폐율의 완화) ①,②, ③ 1. (생략)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7조의2(건폐율의 완화) ①,②, ③ 1. (생략)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62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② 1. 2.(생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제62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② 1. 2.(생략)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⁶⁾
제78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8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같은 조 제50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항 1호 가목에서는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대상이 아닐 것” 와 같이 인용법령의 제명변경이 반영되어 있음.

2)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재산관리
- 최초 제정: 1988.02.25 조례 제1028호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현행 조례: 2023.12.15 조례 제2846호
- 조례의 목적: 순창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 필요이유

- 인용법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4년 4월 1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됨.
- 한편 제19조(국공유재산의 매각) 제1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문으로 제명 변경 전후 내용이 같으므로 조문번호의 수정은 불필요함.

□ 현행조문·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②, ③, ④ 1. 2.(생략)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②, ③, ④ 1. 2.(생략)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 순창군 공인 조례

□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총무
- 현행 조례: 2022.12.06 조례 제2735호
- 조례의 목적: 순창군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규격·등록·재등록 및 폐기·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 필요이유

- 인용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23년 6월 27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됨.
- 한편 제40조(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해서는 조례를 통해 규율하도록 위임하는 조문으로 제명 변경 전후 내용이 같으므로 조문번호의 수정은 불필요함.

□ 현행조문·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규격·등록·재등록 및 폐기·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규격·등록·재등록 및 폐기·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문화유산

- 최초 제정: 2015.12.15 조례 제2312호
- 현행 조례: 2023.12.15 조례 제2846호
- 조례의 목적: 순창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

□ 개정 필요이유

- 국가문화재정책의 변화에 따라 인용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폐지되고 2024년 5월 17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년 9월 15일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관련 입법체계가 변경됨.

□ 현행조문·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보호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u>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보호조례</u> 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5)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중대재해
- 최초 제정: 2017.12.18 조례 제2423호
- 현행 조례: 2017.12.18 조례 제2423호
- 조례의 목적: 순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

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

□ 개정 필요이유

- 인용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각각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입법체계가 변경됨.
- 인용조문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화재안전정책수립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변경됨.

□ 현행조문·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조(목적) 이 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순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순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지역경제
- 현행 조례: 2020.12.15 조례 제2613호
- 조례의 목적: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 필요이유

- 인용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각각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입법체계가 변경됨.

- 인용조문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인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으로 변경됨.

현행조문·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0조(내화시설) 대장간·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 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제10조(내화시설) 대장간·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 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으로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7)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자연재난
- 최초제정조례: 2005.05.18 조례 제1746호
- 현행 조례: 2023.04.28 조례 제2801호
- 조례의 목적: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정 필요이유

- 인용조문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0조가 폐지되고 각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9조로 대체됨.

현행조문·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순창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지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순창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지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8)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지도육성
- 현행 조례: 2022.12.06 조례 제2735호
- 조례의 목적: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정 필요이유

-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가 2022. 1.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법 제159조로 개정됨.

현행조문· 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통합보장
- 현행 조례: 2023.12.15 조례 제2851호
- 조례의 목적: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개정 필요이유

-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조문은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되고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 상위법률 적용에 있어서 혼선방지를 위해 개정이 필요함.

□ 현행조문· 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10) 순창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경리
- 최초 제정: 2006.02.28 조례 제1733호
- 현행 조례: 2022.12.06 조례 제2735호

- 조례의 목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 필요이유

-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에 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46조가 아닌 지방회계법 제46조로 법률 제명의 오기로 인한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필요.

□ 현행조문· 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1.~5.(생략) 6. 지방재정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1.~5.(생략)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11)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소도읍개발
- 최초 제정: 2019.04.15 조례 제2495호
- 현행 조례: 2022.12.06 조례 제2735호
- 조례의 목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순창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 필요이유

- 지원금액에 대한 환수, 즉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근거법령이었던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은 2021년 1월12일 삭제되었고, 같은 날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의 취소 등) 및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로 대체됨.

- 상위법률 적용상의 혼선방지를 위해 개정이 필요함.

현행조문· 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2)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기업유치
- 현행 조례: 2024.09.13 조례 제2940호
- 조례의 목적: 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

개정 필요이유

-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가 2022. 1.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법 제159조로 개정됨.

현행조문· 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순창군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순창군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3)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아동복지
- 현행 조례: 2022.11.11 조례 제2732호
- 조례의 목적: 순창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

개정 필요이유

- 상위법률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에 대한 정의규정인 제2조(정의) 제1호의 내용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에서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로 2024년 2월6일 개정됨.
- 이에 따라 입법체계상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조문·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4) 순창군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공공주택
- 현행 조례: 2019.11.15 조례 제2532호

- 조례의 목적: 순창군에서 건립한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 필요이유

- 체납임대료징수의 근거로써 인용한 상위법률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24일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됨.

□ 현행조문· 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①,② (생략) ③ 체납 임대료의 징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①,② (생략) ③ 체납 임대료의 징수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5) 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조례

□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자연재난
- 현행 조례: 2023.12.15 조례 제2846호
- 조례의 목적: 지진재해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개정 필요이유

- 상위법률인 「지진재해대책법」이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을 통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로 제명 변경됨.

□ 현행조문· 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진재해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진재해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

5. 소관 기관 관련 변경사항 반영 검토

□ 검토방향

- 조례에 인용된 상위기관 등이 조직개편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희망복지
- 최초 제정: 2018.04.17 조례 제2434호
- 현행 조례: 2024.06.17 조례 제2905호
- 조례의 목적: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필요이유

-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 소관기관 명칭변경.

□ 현행조문·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2조(정의) 1. 2.가~마.(생략) 바. 일반 군복무자 등 국가보훈처가 공상 및 전상으로 인정한 사람 사.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사람과 일반군복무자 등 국가보훈처가 인정한 전몰,	제2조(정의) 1. 2.가~마.(생략) 바. 일반 군복무자 등 국가보훈부가 공상 및 전상으로 인정한 사람 사.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사람과 일반군복무자 등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전몰,

순직, 전상, 공상자 등의 사별한 배우자 아.(생략)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유족으로 인정한 선순위자 중 1명	순직, 전상, 공상자 등의 사별한 배우자 아.(생략)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가 유족으로 인정한 선순위자 중 1명
--	--

2) 순창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 기본정보

- 관리책임부서: 감염병대응
- 최초 제정: 2020.10.14 조례 제2590호
- 현행 조례: 2023.12.15 조례 제2846호
- 조례의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 개정 필요이유

-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실시요청, 감염병관리시설 지정,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고시 등의 업무 소관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

□ 현행조문·개정조문 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9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생략)	제9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생략)

<p>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관리기관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④(생략)</p>	<p>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관리기관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도 <u>질병관리청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④(생략)</p>
<p>제13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이하 생략)</p>	<p>제13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u>질병관리청장</u>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이하 생략)</p>

6. 각종위원회관련 조례 정비 검토

1) 위원회 구성 의회의원 참여 관련 검토

□ 당연직·위촉직 규정의 검토

-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및 선출직, 임명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대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간의 권한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음.
- 당연직 위원은 소관하고 있는 직위 및 직책에 따라 당연히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는 것이므로 당연직이 되는 직위 및 직책, 인원이 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특정되어야 할 것임.
- 당연직 위원은 직무를 기준으로 지정되므로 인사이동 등에 의한 직위 및 직책변경시 해당 직위 및 직책을 갖게 된 사람으로 당연히 위원의 자리가 승계되어, 통상 임기는 규정하지 않음.
- 따라서 의회의원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은 인원이 제한되는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실제 운영상 가능하지 않음. 의원이라는 직위 및 직책만으로 당연히 위원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의원 전체가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임.

□ 위원회 의회 의원 필참은 위촉직 구성 조문 정리를 통해 가능

- 조례로써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의회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위촉직 구성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함.
- 위촉직 위원은 통상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위원회의 수행업무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자격 및 직군 등을 열거하고, 이 가운데 단체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이때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는 기준 각호의 하나로 의회의원을 두고 정원을 명시하거나,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 0명을 포함한’ 등의 문구

를 돕으로써 위원회 위원구성에 의회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직무관련 위원회활동 제한**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원의 각종 위원회 참여시 제한사항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 소속 상임위 및 특위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항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경우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직무연관성은 관련사항의 심의 의결시 회피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위원회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사례검토_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 관리책임부서: 기획
- 최초 제정: 2008.04.15 조례 제1874호
- 현행 조례: 2023.04.28 조례 제2801호
- 조례의 목적: 순창군수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당 조례의 경우 2017.05.10. 제2380호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조문이 개정되었으나 그 이전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회의원이 위촉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없음.

- 특히 현행 조문의 경우 당연직위원에 대한 규정이 1호와 3호에 중복 기술되어 있으며, 1호의 경우 당연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군수의 재량에 일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당연직으로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조문임. 또한 당연직위원의 숫자도 1호는 3명, 3호는 4명으로 서로 달라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표 23 .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위원회 구성관련 조문 연혁 비교

2015.12.15 조례 제2312호	현행조례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군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p> <p>1. 순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p> <p>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유지·전문가 등 3명</p> <p>3.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장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이 된다.</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군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p> <p>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을 포함한 실과원소장 중 군수가 지명한 3명</p> <p>2. 위촉직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3.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장수과장, 장류산업사업소장이 된다.</p>

-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율하는 조례는 일부 지자체에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조례’ 또는 ‘학술용역 관리조례’, ‘ 학술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제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용역관리 조례’, 또는 ‘용역과제심의 및 관리조례’ 등의 제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부분의 관련 조례에서 의회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례 가운데 위원회에 의회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석상의 혼선

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②, ③(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명을 포함하여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행정안전실장, 경제문화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위원
 가. 태안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관련분야 및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위원회 구성의 성별 불균형 방지를 위한 보완 필요성 검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참여)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순창군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양성평등법의 취지에 따라 성별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의 해당 조문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과 같은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규정 관련 검토

- 현행 다수의 위원회 관련 순창군 조례에서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해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해져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잔여임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절차과 관련해 행정력 소모 논란 및 공석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소관 조례 중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제한한 규정을 일괄정비를 통해 삭제한 바 있음.
-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 및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적용한
일괄정비검토**

□ 검토방향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단순하게 정리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문장구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 표현 대신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법령을 구성함으로써 입법 의도와 제도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임.
- 한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해당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점검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해왔음.
- 순창군 현행 조례에도 법제처 및 타 지자체 정비기준을 적용해 이해하기 쉬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함

□ 정비대상 용어

- 법제처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정비대상 용어 가운데 우선 적용하는 정비대상 용어는 다음과 같음.

표 24 . 정비대상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전	정비후	정비전	정비후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절사하고	버리고
통할	총괄	잔임기간	임기의 남은 기간
회무	사무	익년도	다음해

□ 일괄정비 조례안

- 순창군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순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순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중 “절사한다.” 를 “버린다” 로 한다.

제2조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

순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3조 (순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순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통할하고” 를 “총괄하고” 로 한다.

제4조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의 개정)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5조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6조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7조 (순창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창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8조 (순창군 노인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창군 노인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9조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중간보고

제10조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11조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의 개정)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회무” 를 “사무” 로 한다.

제12조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13조 (순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순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중 “절사한다” 를 “버린다” 로 한다.

제14조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잔임기간” 을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15조 (순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개정)

순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회무” 를 “사무” 로 한다.

제16조 (순창군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개정)

순창군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회무” 를 “사무” 로 한다.

제17조 (순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개정)

순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회무” 를 “사무” 로 한다.

제18조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

순창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회무” 를 “사무” 로 한다.

제19조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회무” 를 “사무” 로 한다.

제20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회무” 를 “사무” 로 한다.

제21조 (순창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개정)

순창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익년도” 를 “다음해” 로 한다.

제22조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 중 “익년도” 를 “다음해” 로 한다.

IV 신규조례제정제안

1. 현행 정책사업의 추진기준 확보

1) 순창군 빈집 등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인구정책과

□ 관련현황

- 언론보도에 따르면⁷⁾ 순창군은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는 방치된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실태 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함.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2025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임.

□ 제안 취지

- 향후 빈집정비와 활용방안의 수립 등 빈집정비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다수의 지자체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 (목적) 군 내 방치된 빈집 및 빈집예정지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
- (군수의 책무) 빈집 및 빈집예정지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주기 및 해당 계획의 주요내용
- 실태조사, 활용방안, 지원내용 등 규정

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02_0002836571

상위법령

-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참고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강진군 빈집 등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

2) 순창군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인구정책과

관련현황

- 필수정비조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순창군에서는 순창군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함
- 2012년부터 원불교 전북교구 소속 사회복지법인 한울안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해당 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가족, 이혼전후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제안 취지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한 필수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가족센터의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시설기준 등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센터의 운영과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 (목적)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
- (센터의 사업)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아이돌봄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및 지원 등
- (위탁근거) 민간위탁조례 준용
- (운영위원회) 센터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시설기준) 교육실, 상담실, 자료 실 등 공간 및 시설 확보

□ 상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참고조례

-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황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중간보고

3) 순창군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소관부서: 건설과 도시계획팀

□ 관련현황

-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 등은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2024년 순창군에서 가로등 설치 및 이설, 가로등 유지보수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군비 7억 5천만원 수준임.
- 가로등의 설치와 운영은 안전과 편의의 관점에서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사안으로 가로등의 설치기준과 설치의 우선순위, 관리자의 운영 등에 관해

조례를 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음.

- 순창군의 경우 추진 근거로써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제안 취지

- 조례 제정을 통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정책변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조명시설 및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함.
- 또한 에너지복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에너지 취약지역과 보안취약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우선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공공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함.

□ 주요내용

- (목적) 순창군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공공복리증진에 기여
- (설치기준)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하고, 소요 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와 LED 조명을 사용한 가로등 설치를 위해 노력
- (설치 우선순위와 신설 제한)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 수해가구가 많은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의 밀집 주거지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에 우선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수 개인의 편의와 영리를 위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신설을 제한함.
- (비용부담) 가로등의 설치와 운영의 비용은 균비로 부담하되, 특정수혜자가

설치한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수혜자가 부담함.

상위법령

- 해당 없음

참고조례

- 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 고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등

4) 순창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관련현황

- 2024년 현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민들의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이 진행되고 있음. (총액 1천1백만원 국비 40%, 도비12%, 군비 28%, 자부담 20%)
- 현재 순창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근거조례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

제안 취지

- 군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당사업이 이전재원의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지원과정과 안전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함.

주요내용

- (목적) 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원계획)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에 대한 연간 계획 수립
- (보조금 지원) 현재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금속배관, 퓨즈콕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스타이머콕⁸⁾,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⁹⁾ 등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예산에 대해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

상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참고조례

-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지원 조례
-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 조례 등

5) 순창군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농업축산과

관련현황

- 순창군에서는 현재 수의사법 제21조에 의거, 동물병원 개업수의사 4명을 공수의로 위촉운영하고 있음. 공수의는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등 재난형 가축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조기확산방지를 위한

8)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로 서울 성동구, 충남 청양군, 전남 영암군, 충남 예산군등에서 가스 타이머 지원 조례 운영

9) 부식되는 기존 철제용기 대신 안전성 확보에 용이한 복합재료로 제조된 용기로 해당 용기의 보급을 위해 경북 울진군,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용기 보급 지원조례’ 를, 전남 신안군에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조례’ 를 운영

동물 전염병 예찰 및 검진을 위한 채혈 등을 진행하고 매월 업무보고를 하고 있음.

- 순창군에서는 매월 공수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공수의수당’ 세부사업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총액은 6천만원임.

□ 제안 취지

- 위촉 및 수당의 포괄적인 지원근거는 수의사법 제22조를 통해 확보되어 있으나 위촉 기간, 수행업무 및 업무보고 의무, 수당 및 여비 기준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음.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는 군민들의 생업 유지와 가축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 공수의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의 활동이 명확한 입법근거를 바탕으로 관리운영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목적)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
- (위촉) 동물병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가운데 4명 이내, 위촉기간 1년, 재위촉 가능
- (수행업무) 동물의 진료, 동물질병의 조사 연구, (월 4회 이상)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 동물의 건강진단,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등
- (해촉기준)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1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 업무 보고 지연 및 행정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조작·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등 임기 중이라도 해촉 가능, 해촉 당월 수당은 새로 위촉

된 공수의에게 지급

- (업무보고) 매월 수행업무 내용의 실시상황을 군수에 보고, 전염병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
- (수당 및 여비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위촉한 공수의 수당 기준 준용해서 수당지급, 공무 여행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지급

상위법령

- 수의사법 제21조, 제22조 등

참고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리시 공수의 조례 등

6) 순창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관련현황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서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고하고 있음.
- 2024년 현재 순창군에서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1억 21백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5억 25백만원, 도 추가 16백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1백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바우처 지원사업(59백만원) 등 약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함.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거조례를 제정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제안 취지

-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재활 전문치료센터, 자립지원 생활센터, 돌봄, 상담 교육,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종합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목적) 순창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5년 주기 기본계획과 연단위 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
- (발달장애인 종합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사업) 자조단체의 활동 지원,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돌봄 지원,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등
- (협력체계의 구축) 관련 복지단체 및 시설, 의교리관, 교육기관, 사업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 (비밀누설금지) 업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또는 사적 이용 금지

□ 상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고조례

-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7) 순창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관련현황

- 순창군은 2024년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 중임.
- 2024년 편성된 사업비는 군비 570만원이며, 11개 읍면 19개소에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비용임.
- 다수의 지자체에서 아동보호구역 운영조례를 제정해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시설물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으나 순창군에는 현재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제안 취지

- 아동보호구역의 추가 지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공고방법, 추진 사업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함.

주요내용

- (목적) 유괴 등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공고)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지정,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
- (사업내용)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아동안전보호 인력 배치,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실태조사) 아동보호구역 운영 관련 현황 파악
- (지원 등) 유관기관 등에 위탁 가능, 위탁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상위법령

- 아동복지법 제321조

참고조례

- 남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8) 순창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농업축산과

관련현황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한편으로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제고되고 있음
- 2024년 순창군에서는 ‘유기동물 보호’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지원’, ‘유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사업에 총 4천 6백만원을 편성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및 유기견 구조 포획과 진료 및 치료, 입양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다수의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안 취지

- 유기동물 수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구조 및 보호, 입양 지원 사업 등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근거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 (목적)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
- (기본계획 수립)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실태자료 수집·분석, 통계관리
-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정) 현재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 참고로 기술
-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 동물보호법 제36조 제4항 각호에 해당시 지정 취소
- (보호동물의 공고) 구조하여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
- (피학대동물 격리 및 보호) 학대받는 동물 구조, 소유자로부터 격리, 보호조치 후 경비 청구 가능

상위법령

-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고조례

- 부여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등

9) 순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획예산실 공보팀

관련 현황

- 근래 다수의 지자체들이 다양한 SNS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정책과 문화관광행사 등을 홍보함. 일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자체 인지도 제고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여러 지자체에서 ‘SNS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SNS관리 및 운영 조례’,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명칭의 지자체 소셜미디어 홍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순창군에서는 순창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순창튜브 등 군정 및 관광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조례 제정을 통해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콘텐츠 관리의 권한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민 참여 및 민간위탁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안 취지

- 소셜미디어 게시물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소통창구로써의 역할과 운영방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목적)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시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순창군과 주민 및 주민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사업의 내용) 소셜미디어를 통해 △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보건 및 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 의견 개선, 군정상담 등 주민과의 소통에 관련된 사항, △국정, 도정,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셜미디어 게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등을 게시할 수 있음.
- (군수의 책무 및 권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주민들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 추진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 주민 등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시정 관련 질의사항 및 의견 등에 관해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
-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대변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 게시한 경우 △ 오타 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자의 소셜계정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통지
- (기타) 소셜미디어 군민서포터즈 (또는 개방형 주민리포터제) 운영 및 지원 근거, 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근거 등

□ 참고조례

-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 진안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순창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안전재난과

□ 관련 현황

- 순창군은 대부분의 지형이 산지 및 산간분지로 형성되어 있어 산불방지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순창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4년 기준으로 11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총 19억 3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산불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표 27. 2024년 순창군 산불방지관련 세부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산불 장비(자본)	18	0	18	0	0
산불 홍보비(경상)	15	0	15	0	0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자체)	4	0	0	4	0
산불방지대책	760	0	91	669	0
산불방지대책(자체)	129	0	0	129	0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69	28	12	29	0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60	24	11	25	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86	315	142	330	0
산불진화장비 확충	11	0	0	11	0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27	11	5	11	0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58	23	10	24	0

□ 제안 취지

- 국비사업으로 운영 중인 산불전문진화대를 비롯해 순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등 산불방지단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목적)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
- (산불방지 활동지원) 산불방지활동 활성화를 위해 비용 및 물품지원
- (관련 캠페인 등)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없는 마을, 산불 조심기간 등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 관련 내용
- (포상) 산불예방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근거 마련

□ **참고조례**

- 완주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영덕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 조례제정을 통한 정책제안 검토

1) 순창군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

□ 소관부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 관련 현황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되다가 만18세에 자립정착금과 사회로 나오는 ‘보호종료 아동’ 이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약 2600명에 달했으며 미성년인 이들의 보호종료후 자립지원에 관한 문제가 이슈화됨.
- 2021년 ‘보호종료아동지원방안’ 이 발표되고 이들에 대한 명칭을 ‘보호종료아동’ 이 아닌 ‘자립준비 청년’ 으로 변경함.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보호기간의 연장) 등이 신설되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됨.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등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 제안 취지

-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주요내용

- (목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연간계획수립, 예산지원근거, 지원체계, 추진방법 등
- (자립지원사업)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위탁근거) 필요시 자립지원사업 관련기관, 단체 및 시설에 위탁
- (자립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아동청소년 복지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자립지원 기본방향 협의, 자립지원서비스 발굴 등 협의

참고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순창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

관련 현황

-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 등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
- 군에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홍보하고, 발생시 안전한 수거 및 소각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험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군산시, 무주군, 부안군 등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불용의약품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 소관부서로는 홍보 및 복약지도를 위해 보건소에서 담당하도록 한 경우(군산시, 무주군, 완주군 등)와 수거체계를 위해 환경담당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 경우(부안군, 남원시, 정읍시 등)로 나타나고 있음

제안 취지

- 순창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발생 최소화와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한 수거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홍보 및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에서 담당하되, 수거 체계를 위해 환경위생과자원순환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함(군산시, 완주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참고)

□ 주요내용

- (복약지도 홍보활동)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협력해 군민들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대상 복약지도 및 홍보활동
- (수집) 관내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을 수집장소로 지정, 홍보 운영. 보건소와 자원순환팀의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매월 지정수거 실시
- (보관) 관내 약국의 약사 등 수집장소의 관리담당자가 지정수거일에 수거운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관 관리
- (처리)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소각처리

□ 참고조례

-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완주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3) 순창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 관련 현황

-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 속에서 모유수유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등에 따라 영유아 및 모성 건강의 보호 및 모유수유의 편의 확보를 통한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됨.

- 모유수유 등을 위한 공간을 설치 또는 지원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이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 지자체에 따라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모유수유 주간을 운영하거나 모유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제안 취지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도 모유수유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 모성보호 조치를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주요내용

- (목적)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순창군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
- (사업의 내용)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 및 지원, 교육지원, 모유수유 홍보 등
- (기타) 모유수유 지원계획의 수립, 모유은행의 운영 등 검토

□ 참고조례

- 보은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 순창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 관련 현황

- 예술인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순창군은 현재 「순창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군민들의 문화복지에 관해서는 기술하고 있으나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해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은 규율하고 있지 않음.
- 경기 하남시, 가평군, 수원시, 경북 김천시 등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진흥조례와 별도의 예술인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에서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외에 예술인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 경북 경산시의 경우 「경산시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남 강진군의 경우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문화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관련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음.

□ 제안 취지

- 현재의 순창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와 별도의 예술인복지증진조례를 제정하거나 현재의 조례에 예술인 복지증진 관련 내용을 추가해 제명을 개정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취약예술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목적)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순창군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
-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예술인 복지증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사업 및 재원조달상황 등을 포함한 증진계획을 수립

- (창작공간지원)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

참고조례

-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등

5) 순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안전재난과

관련 현황

-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9만 4천 건의 화재가 발생해 1만 2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경우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화재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물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음.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유독가스 차단 성능을 인증받지 않은 방연마스크를 구입해 논란이 된 바 있음.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된 방연마스크를 구입하도록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방연마스크를 통해 화재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맹독성인 시안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일정 시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역시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화재감시자에게 한국산업표준이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연마스크를 지급하도록 2022년 10월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를 개정, 시행함.

□ 제안 취지

- 방연마스크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시설들을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에 비치될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인증기준 등을 명시해 안전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

□ 주요내용

- (목적)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

○ (방연마스크의 비치장소)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순창군의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순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인증 방연마스크 기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참고조례

-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 순창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안전재난과

□ 관련 현황

-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음.
- 전북도내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전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 제안 취지

-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당연직은 관련업무 담당 국장 위촉직은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

참고조례

- 부안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무주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순창군 임신 및 가임지원 조례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관련 현황

-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2023년 한해 전국 출생아 수¹⁰⁾는 230,028명에 불과했으며 전북 전체의 출생아 수는 6,622명에 불과한 상황임.
-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러한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고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과 조례를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러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임신을 지연하고자 하는 경우 이후 임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임력을 보존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제안 취지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10)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발생한 출생아 수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거주요건) 지자체에 따라 거주기간은 6개월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순창군의 경우 거주기간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지원대상 연령요건) 지원대상에 대해 연령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성인으로만 규정하거나, 40세 혹은 44세, 49세 등으로 상한 연령을 규정하는 등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역시 순창군에 맞는 연령규정을 두거나 두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지원대상 기타요건)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요건 또는 가임력 저하(생식 능력 손상 등)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의 요건 등을 추가할 것인가의 판단이 필요함.
- (지원사업) 난자동결 시술 및 가임력 보존 지원,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군수가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참고조례

- 무안군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